무역협정과 경제외교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무역으로 살아가는 경제

싱가포르만큼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는 드뭅니다. 2020년 싱가포르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320%에 해당했습니다.[1] 이 수치는 제A편에서 1819년의 자유항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본 중계무역항 기능과, 지금도 항만과 공항을 거쳐 가는 재수출 무역을 반영합니다. 이런 도시는 관세 뒤에 숨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상대국이 시장을 계속 열어 두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대국도 소국과 똑같이 엄격하게 구속하는 규칙이야말로 싱가포르에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역사의 대부분 동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1995년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라는 다자체제를 통해 이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1990년대 말 다자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양자 및 복수국 간 협정을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장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나중에 채택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규칙에 대한 본보기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부는 발효된 협정을 29건으로 집계했습니다.[2]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최초의 양자협정

첫 번째 협정 물결은 개방된 시장에 대한 싱가포르의 신념을 공유하는 상대국들과 이루어졌습니다. 뉴질랜드와의 경제긴밀화협정은 2000년 11월에 서명되어 2001년 1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이어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이 2002년 11월에 발효되었습니다.[3]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협정으로, 2003년 5월 6일에 서명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4] 해양법 분야에서의 역할을 앞에서 소개한 토미 코(Tommy Koh)가 싱가포르 협상단을 이끌었습니다.

워싱턴과의 이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게는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를 동남아시아에 더 긴밀하게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章)은 당시 WTO 약속을 넘어서는 내용이었고, 이후 협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시장 접근과 높은 규제 수준을 결합하는 방식은 싱가포르 통상정책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네 개의 작은 경제에서 CPTPP까지

가장 야심 찬 구상은 작은 그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로스카보스 APEC 회의에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정상들이 경제긴밀화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브루나이는 2005년 4월 협상에 합류했습니다.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2005년 7월 18일 웰링턴에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했고, 브루나이는 2005년 8월 2일에 서명했습니다.[5] 네 경제 사이의 이 작은 협정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탈퇴한 뒤 남은 11개 참여국은 2018년 3월 8일 산티아고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2018년 12월 30일 싱가포르를 포함해 먼저 비준한 6개국에 대해 발효되었습니다.[6]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이 궤적은 싱가포르가 거듭 활용해 온 기법을 보여 줍니다. 소국들이 자기들끼리 협정을 시작하고, 높은 기준을 세우고, 더 큰 상대국에게 문을 열어 둡니다. 큰 상대국이 들어올 때는 소국들이 설계한 구조에 합류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영국의 가입으로 CPTPP는 태평양 너머로 확장되었습니다.

RCEP와 아세안 중심 네트워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아세안과 대화 상대국들 사이의 협정에서 발전했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화상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15개국이 서명했고, 2022년 1월 1일 먼저 비준한 10개국에 대해 발효되었습니다.[7] 회원국은 세계 인구와 생산의 각각 약 30%를 차지합니다. RCEP는 규칙 측면에서는 CPTPP보다 덜 야심적이지만, 아세안을 중심에 두고 중국, 일본, 한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연결한 최초의 협정입니다.

싱가포르에게 두 협정의 공존은 균형 전략의 경제적 표현입니다. CPTPP에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태평양 동반자들이 포함되고, RCEP에는 중국이 포함됩니다. 싱가포르는 두 협정 모두에 속해 있으며, 각각에 추가 회원국이 가입하는 것을 지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기업은 환태평양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네트워크 모두에서 특혜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분야 약속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디지털 협정

유럽과 관련해 싱가포르는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 국가 사이의 최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2019년 11월 21일에 발효되었으나, 함께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은 아직 모든 회원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8] 경제적 이해관계는 상당합니다. EU와 싱가포르 간 상품 교역은 2025년 478억 유로, 서비스 교역은 2024년 829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2024년 싱가포르에 대한 EU의 투자 잔액은 2,498억 유로였고, EU에 대한 싱가포르의 투자는 2,739억 유로에 이르렀습니다.[9]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최신 세대의 협정은 데이터를 다룹니다.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2020년 6월 12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에 화상으로 서명했고, 한국은 2024년 5월 여기에 가입했습니다.[10] 2025년 5월에 서명된 EU–싱가포르 디지털무역협정은 2026년 2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전자송장, 디지털 신원, 소스코드 취급을 다룹니다. 은행, 자산운용사, 지급결제 기업이 아시아 전역 고객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금융 중심지에게는, 합의된 보호장치 아래 데이터를 국경 너머로 이동할 권리가 상품을 이동할 권리만큼 중요합니다.

조세조약 네트워크

경제외교에는 조세도 포함됩니다. 싱가포르는 약 100개 관할권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제한적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정보교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11] 이러한 조약은 싱가포르와 조약 상대국 사이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낮추며, 투자자에게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펀드매니저와 패밀리오피스에게 조약 네트워크는 역내 투자에서 나온 소득이 과도한 세금 유출 없이 싱가포르에 도달하는지를 좌우합니다. 또한 이 네트워크는 싱가포르가 국제 기준에 따라 조세 정보를 교환하는 법적 경로이기도 하며, 이 주제는 제E편 제II장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경제외교의 한계

무역협정이 대국의 정책 선택으로부터 작은 경제를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2025년 4월 미국은 수입 상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관세는 양자 자유무역협정이 있고 무역수지가 미국에 유리한데도 싱가포르에 적용되었습니다.[12] 이 사건은 조약의 힘이 그것을 지키려는 큰 당사국의 정치적 의지만큼만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개방 무역에 대한 자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세안, CPTPP, 유럽의 상대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 정책의 이러한 전환이 금융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K편 제V장에서 살펴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Wikipedia, “Economy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0년 기준 GDP 대비 무역 비율 320%, 명목 GDP 6,595억 7,000만 미국달러(2026년 추정), 인구 6,211,400명(2026년). ↩
2. Ministry of Energy, Trade and Industry, “Free Trade Agreements”(meti.gov.sg, 페이지 최종 갱신일 2026년 8월 21일,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Over the years, it has forged an extensive network of 29 implemented agreements.” ↩
3. Agreement between New Zealand and Singapore on 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00년 11월 14일 서명, 2001년 1월 1일 발효;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a New-Age Economic Partnership, 2002년 1월 13일 서명, 2002년 11월 30일 발효. ↩
4. Wikipedia, “Singapore–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03년 5월 6일 서명, 2004년 1월 1일 양국에서 시행, 2003년 7월 31일 미국 상원 비준, 2003년 9월 3일 법률로 서명. ↩
5. Wikipedia,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02년 로스카보스 APEC 정상회의에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가 협상 개시; 브루나이는 2005년 4월 정식 협상 당사국으로 합류; 2005년 7월 18일 웰링턴에서 협정 서명(당사국 표에 따르면 브루나이는 2005년 8월 2일); 2006년 5월 28일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대해 발효. ↩
6. Wikipedia,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18년 3월 8일 산티아고에서 서명; 2018년 12월 30일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에 대해 발효; 싱가포르는 2018년 7월 19일 세 번째로 비준; 영국의 가입은 2023년 7월 16일 서명, 2024년 12월 15일 발효. ↩
7. Wikipedia,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0년 11월 15일 베트남이 주최한 화상 아세안 정상회의에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서 서명; 2022년 1월 1일 발효; 15개 서명국이 세계 인구의 약 30%(약 22억 명)와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 ↩

8.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EU trade relations with Singapore"(policy.trade.ec.europa.eu,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발효; EU–싱가포르 투자보호협정은 "being adopted or ratified" 상태로,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면 발효; EU–싱가포르 디지털무역협정은 2025년 5월 7일 서명, 2026년 2월 1일부터 발효. ↩

9. European Commission, "EU trade relations with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5년 상품 교역 478억 유로, EU 흑자 124억 유로; 2024년 서비스 교역 829억 유로, EU 적자 92억 유로; 2024년 싱가포르 내 EU의 외국인직접투자 잔액 2,498억 유로, EU 내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잔액 2,739억 유로. ↩

10. Wikipedi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0년 6월 12일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화상으로 서명; 한국은 2024년 5월 3일 네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중국의 가입 절차는 2022년 8월 18일 공식 개시. ↩

11.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List of DTAs, Limited DTAs and EOI Arrangements"(iras.gov.sg, 페이지 최종 갱신일 2026년 2월 4일,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는 "around 100 jurisdictions"와 협정을 체결. ↩

12. Wikipedia, "Singapore–United States relation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상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를 발표했으며, 사실상 싱가포르에 10%가 적용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